

#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제도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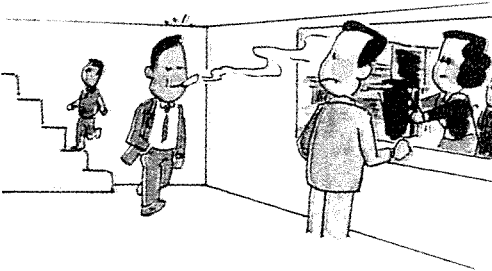
보건복지부



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해야 합니다.

■ 19세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담배판매를 금지합니다.

◀2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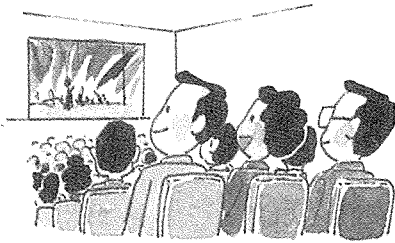


■ 기타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광고·판촉활동이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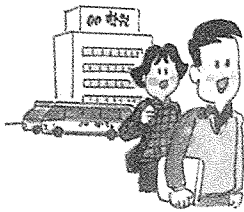


■ **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란** : (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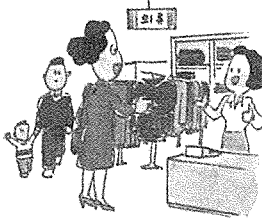
- 연면적 3,000㎡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,000㎡ 이상의 복합건축물
-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



- 학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써 연면적 1,000㎡ 이상의 학원



- 도·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대형점·대규모 소매점·도매센터 및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



-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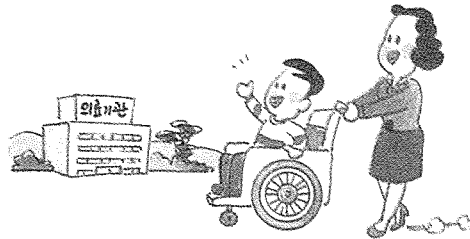
-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



-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



-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
-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



- 공항·여객부두·철도역·버스정류장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,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

